

## **시설의 통합 설치·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**

(제22조 관련)

### 1.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

#### 가. 시설 및 설비기준

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, 사무실, 상담실, 식당, 조리실, 화장실, 목욕실, 세탁장, 건조장,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·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#### 나. 인력기준

간호(조무)사, 사무원, 영양사, 조리사(원),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 2.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

#### 가. 시설 및 설비기준

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·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#### 나. 인력기준

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.